

2023 - 2024 TAX UPDATE





CLEAN VEHICLE CREDIT (청정 차량 크레딧)

- 세액 공제는 차량당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지만, 납세자는 같은 해에 여러 대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한 모든 적격 새 차량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는 납세자가 대리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선지급 크레딧 금액을 연간 2대의 차량으로 제한했습니다.
- Tesla 및 General Motors와 같은 제조업체의 차량은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2022년 이후 판매된 차량에 대해 청정 차량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임차인은 청정 차량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르면 적격 차량은 납세자로부터 처음 사용이 시작되는 차량으로, 재판매용이 아닌 납세자가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입니다.
- 차량의 중요 자재 및 배터리 구성 요소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 처리, 추출 또는 생산되는 경우 청정 차량 크레딧의 최대 금액은 자격을 갖춘 차량당 \$7,500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한은 납세자가 2023년 4월 17일 이후에 인도받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요구 사항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3,750로 제한됩니다.
- 2024년에 운행되는 차량부터 납세자는 IRC §30D 및 §25E에 따라 청구된 크레딧에 대해 대리점에서 청정 차량 크레딧 선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가 차량이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딜러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만 해당).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IRC §25C에 따른 환불 불가능한 Nonbusiness Energy Credit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3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공제 비율이 다음 비용의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 해당 과세연도 동안 설치된 적격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했거나 발생한 금액 그리고,
 - 해당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가 지불했거나 발생한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지출 금액(인플레이션 감소법 이전에는 이 금액에 대한 percentage limit이 없었습니다)
- 평생 크레딧 한도인 \$500를 연간 크레딧 한도인 \$1,200로 대체됩니다.
-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목록에 공기 밀봉 재료 또는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 확장된 에너지 효율 자산 목록에는 천연가스 히트펌프, 천연가스, 프로판, 석유 난로 또는 온수 보일러, 바이오매스 스토브 또는 보일러, 적격 패널보드, 하위 패널보드, 분기 회로 또는 피더의 개선사항 또는 교체사항이 있습니다.
-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건물 외관 구성 요소 목록에서 아스팔트 및 금속 지붕이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2024년 이후 서비스가 시작된 모든 품목에 대해 적격 제조업체의 생산이 요구되고,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적격 제품 식별 번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 (QLACs)

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QLAC)은 납세자가 IRA에서 자산을 이전하여 은퇴 연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QLAC 계약에 대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200,000(2025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LAC은 상속받은 IRA의 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QLAC는 Defined Contribution 플랜, 기존 IRA, §IRC 403(b) 플랜 및 정부 IRC §457(b) 플랜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QLAC에 따르면, 구매 은퇴자가 연금이 시작되는 연령 이전(또는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지불했지만 아직 연금 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보험료는 계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NEW ROTH SEP IRA (NEW SIMPLE SEP IRA)

SECURE 2.0 법은 새로운 IRC §402(h) (1) (C)를 추가하여 SEP IRA가 2023년부터 Roth SEP IRA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Roth SEP IRA에 대한 고용주의 contribution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Traditional SEP IRA에 대한 contribution은 직원 과세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Roth SEP IRA는 자영업 소득이 있지만 소득세 납부 의무가 낮거나 없는 고객에게 훌륭한 옵션이 될 것입니다.

MATCHING CONTRIBUTIONS FOR STUDENT LOAN REPAYMENT

Defined Contribution Plans에 대한 고용주의 매칭 contribution을 계산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직원 은퇴 contribution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제도 연도에 적용됩니다. 적격 학자금 대출 지불은 직원의 적격 고등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직원이 발생시킨 모든 부채입니다. 또한 정부 고용주들은 그러한 상환과 관련하여 457(b) 플랜 또는 다른 플랜에 상응하는 contribution 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NEW AUTOMATIC ENROLLMENT PLAN OPTIONS

SECURE 2.0 Act는 두 가지 새로운 "자동 등록" 계획 조항을 제공합니다.

- 직원의 은퇴 연금에 contribution하고 직원에게 현재 IRA contribution 한도 옵션보다 더 많은 contribution 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 이전에 은퇴 계획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한 또 다른 "스타터" 401(k)/403(b) 계획 옵션은 직원이 플랜에 contribution 하는것을 연기하는 것만 허용하고 연간 IRA contribution 한도금액에 contribution 하는것을 한정시킵니다 (현재 \$6,500/\$1,000 catch-up contribution). 아마도 이 옵션을 주는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은퇴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새로운 표준 401(k) 또는 403(b) 계획을 시작하는 고용주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제도 연도부터 적용되는 최소 직원 contribution rate인 3%로 직원을 자동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 contribution 방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IRC §414(w) (3)의 요구 사항에는 직원이 탈퇴하거나 다른 contribution rate을 선택하고 재무부의 투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Treas. Regs. §2550.404c-5.

직원이 다른 contribution rate을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 contribution rate은 최소 3%이며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10%까지 증가합니다 (2024년 이후 종료되는 제도 연도의 경우 15%).

BUSINESS CLEAN VEHICLE CREDIT

2022년 12월 31일 이후 및 2033년 이전에 구매한 적격 차량의 경우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 적용 대상입니다. 세금 혜택 (Credit) 의 상한은 \$40,000 (총 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인 차량의 경우 \$7,500) 입니다.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 Credit은 구매 시점에서 딜러에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Tax-exempt entities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MONETIZING ENERGY CREDIT

2023년 과세연도부터 기업들은 에너지 세금 혜택 (Credit) 을 판매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 판매로 인한 수입을 인식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환불할 수 없는 공제액을 환불할 수 있는 공제액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 (Credit) 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 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 Energy Investment Credit
-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캘리포니아는 FATCA 규정 사항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은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와 함께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으면 \$20,0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 \$10,000 + 캘리포니아 \$10,000).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2024년 1월 1일 부터, Corporate Transparency Act of 2021 에 의해 의무화된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요건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고 대상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특정소유주와 임원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 (FinCEN) 에 보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eneficial owner란?

Beneficial owner는 직간접적으로 신고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보고 대상

- A domestic corporation, LLC, including a single-member LLC 및
- A foreign corporation, LLC, or Secretary of State 등 정부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보고 제외 대상

- General partnerships and trusts,
- Investment companies and advisors,
- Tax-exempt organization 및
- 20명 이상의 US 정규직 직원과 총 수입500만 달러 이상의 회사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 1/1/2024 이후 설립된 신규 국내 및 해외 법인: 설립 및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존 법인: 2024년 이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는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NEW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 FORM

2024년부터 단기 임대 재산 (예: Airbnb) 소유자는 사업용 개인 재산을 신고하기 위해 새로운 Form BOE-571-STR, 단기 임대 재산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사업용 개인 재산은 1년에 한 번 재평가됩니다. 사업주는 매년모든 용품, 장비 및 집기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Form BOE-571-ST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비례 배분 신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는 모든 납세자의 총 의료 비용이 조정후 총 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3년 의료 마일리지 (medical mileage) 비율은 마일당 22¢입니다.

INCOME EXCLUSION OF CANCELLATION OF DEBT ON PRINCIPAL RESIDENCE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주거주지의 모기지 융자 탕감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제 됩니다. (부부 공동 보고 시 \$750,000 까지, 부부 별도 보고 시 \$375,000 까지) 캘리포니아는 2013년 이후, 주 거주지 모기지 융자 탕감 소득 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은퇴 연금 플랜 (401(k), SEP IRA 등) 에 저축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023년의 경우 401(k) 의 최대 금액은 \$22,500 (50세 이상인 경우 \$30,000) 이고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의 최대 금액은 \$66,000입니다. 2024년에 401(k) 의 경우 최대 \$23,000 (50세 이상인 경우 \$30,500), SEP IRA의 경우 최대 \$68,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납세자는 2023년 세금 공제를 위해 2024년 4월 15일까지 IRA 계정에 최대 \$6,500 (50세 이상인 경우 \$7,500) 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최대 \$7,000 (50세 이상은 \$8,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소득 (conversion income) 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환하는것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과세 연도 중 2023년에 72세가 되는 납세자는 73세가 된 다음 해의 4월 1일까지 첫번째 최소요구 분배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를 수령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MD를 연기한 납세자는 두 번째 해에 2번의 RMD를 수령해야 합니다. RMD를 수령해야 하는 자격이 되면 매년 12월 31 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은퇴 연금계좌 소유자가 59½세가 되기 전에 계좌에서 은퇴금 수령 (distribution)을 하게 되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 또는 적격 연금 플랜에서 수령한 은퇴 연금 금액은 수령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롤오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없이 롤오버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목적과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10% 추가 세금에서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3년 예외 적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HILD TAX CREDIT (CTC)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녀 세금 공제액은 자녀당 \$2,000입니다. 이 자격이 되는 아동은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을 소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자녀의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녀가 아닌 other dependent에게 제공되는 \$500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제액 (Credit) 중 \$1,700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S

개인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 (Itemize Deductions)를 선택할 경우, 2023년 조정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60%까지 현금 contribution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0% of Federal AGI)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RS는 실제 통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또는 실제 통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 화폐의 과세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S Notice 2014-21)

- 1. 2023년 중 어느 시점이든지 가상 화폐로 금전적 이익을 수령, 판매, 송금, 교환 또는 취득한 납세자는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2.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 3.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4.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납세자는 과세 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를 시작으로 가상 화폐 플랫폼은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해 Form 1099-B를 발급해야 합니다. Coinbase 및 Robinhood와 같은 많은 플랫폼은 이미 1099-B양식과 유사한 명세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종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가상 화폐 거래 관련 1099 신고가 적어도 2024년 (2025년 초 발행되는 1099) 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7일부터 단일거래에서 \$10,000 이상의 코인 포함 가상화폐를 받으면 거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Form 830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동일하게 워시세일 (Wash Sale)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 화폐를 매도한 후 매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사한 가상 화폐를 매수한 납세자는 주식매도에 대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NONFUNGIBLE TOKENS (NFT)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token)입니다.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NFT 의 Collectible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look-though" 분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 Notice 2023-27). NFT 가 Collectible 로 판단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Collectible 에는 28%의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IRA 를 Collectible 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은 IRA 소유자의 과세 가능 분배금으로 간주됩니다.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23년 연간 증여세 공제액은 \$17,000 (2024년은 \$18,000)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17,000 이상의 증여를 하는 납세자는 해당 증여를 증여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1인당 통합 증여 및 상속세 면제는 \$12,920,000 (2024년은 \$13,610,000)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후에 \$5,000,000으로 다시 감소할 예정입니다. 연간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평생 공제액에 합산되므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2023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최대 \$120,000의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240,000까지 (2023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2023년 동안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시 해외계좌를 2024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0/15까지 연장가능) 외국 금융 계좌에는 다음 계좌들이 포함됩니다:

- 중개 계좌 (brokerage accounts), 뮤추얼 펀드 (mutual funds), 신탁 (trusts) 또는 기타 유형의 외국 금융 계좌.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5,71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56,107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 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연말 기준: 미국 거주시 - 부부 \$100,000 /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 부부 \$400,000 /Single \$200,000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 부부 \$150,000 /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 부부 \$600,000 /Single \$300,000

PRINCIPAL RESIDENCE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 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ENALTY ISSUE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CONTINUE IN 2023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면제 자격이 없는 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성인 1인당 \$900 (부양 자녀당 \$450);
- 연간 최대 \$2,700 까지

FIRST-TIME PENALTY ABATEMENT

2022년 1월 1일부터 FTB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납세자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늦었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요청은 구두 (orally) 또는 서면 (in writing)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IRS)는 4년에 한번씩 벌금감면을 허락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벌금감면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 벌금감면은 개인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제공되며 세금 보고서 미제출, 세금 미납, 늦은 세금 보고서 제출 또는 늦은 세금 납부에 한에 적용됩니다.

요청은 구두 또는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투자자

REINVESTED DIVIDENDS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CAPITAL GAIN (LONG-TERM)

	Taxable Income Breakpoint (2023)						
Rate	독신 (Single)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개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외부모 (Head of Household)			
0%	\$44,625	\$89,250	\$44,625	\$59,750			
15%	\$492,300	\$553,850	\$276,900	\$523,050			
20%	No Breakpoint						

^{**}조정후 총소득(AGI) 금액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INVESTMENT INTEREST

투자 시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STALLMENT SALE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사업자

CALIFORNIA MINIMUM WAGE

2024년 1월 1일부터 직원 수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시급은 \$16.00 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LA시의 최저시급 \$16.78, LA시 미편입지구 (Unincorporated area of LA) 의 최저시급 \$16.90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캘리포니아에서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LLC, S Corporation, 파트너십들은 과세 연도 2021년 - 2025년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 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주주)의 연방 순이익 (federal net income) 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파트너(주주)가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 수탁자 (Fiduciary), 상속재산 (Estate), 신탁 (Trust), Single member LLC 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의 경우, 그 과세 연도 동안 6월 15일까지 첫 번째 납부금 (\$1,000 또는 이전 과세 연도에 납부한 선택 세금 (Elective tax)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격 조건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있습니다. 나머지 납부금은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CALSAVERS PROGRAM

CalSavers는 고용주가 자체 은퇴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은퇴 연금 제도입니다.

IRS는 캘리포니아 CalSavers 프로그램을 Roth IRA로 분류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직원당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번째 벌금 통지시). 직원이 1명 이상인 고용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501(c)(3) 면제 대상인 종교 단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NET OPERATING LOSS (NOL)

AUTOMOBILE EXPENSE

SECTION 179 AND SPECIAL DEPRECIATION

MEAL & ENTERTAINMENT

PENSION PLAN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NOL은 과세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세소득의 100%가 허용됩니다). 이월은 무기한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NOL은 최대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연방과 캘리포니아 모두 전기 이월(carryback)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 (Standard Mileage Rate) 은 65.5¢입니다. 납세자는 입증을 위해 자세한 마일리지 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 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동안 Section 179에 따라 사업주는 \$2,89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1,16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자격이 되는 새 장비혹은 중고 장비 구입 시 80%까지 Bonus depreciation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Bonus Depreciation 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매년 20% 씩 감소합니다.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 에 대한 Deduction 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식사 및 Travel 에서의 식사도 50% 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 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 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INCOME TAX AUDIT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헌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시 필요합니다.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구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구좌에서 개인 구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보고해야 합니다.

INCOME TAX AUDIT

FOREIGN GIFT

2023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8,567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납세자가 form 1099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form 1099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ue Dates까지 IRS 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 건당 \$60 ~ \$310 벌금이 부과됩니다.

Form 1099 Due Dates

1) Paper Form 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4,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2/28/2024

2) E-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4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3/31/2024

3) Recipient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4,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2/15/2024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s, 영수증, 송장 (Invoices) 및 기타모든 문서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14

INCOME TAX AUDIT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2023년 9월 14일, 국세청은 모든 새로운 ERC 환급 청구 처리를 중단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RC 를 부정 청구할 경우 처벌 또는 형사 기소 될 수 있습니다. ERC 청구자는 스스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을 통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구자는 신청 대리인에게 ERC 세금 환급액에 대한 일정 비율 (Percentage) 을 지급하거나 또는 성사 사례금 (Contingency fee) 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ERC 환급 금액 만큼 임금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ERC 환급금을 연방 세금 보고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며, 캘리포니아주 역시 납세자가 세금 보고에 ERC 가 포함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ERC 청구 임금이 PPP Loan 이나 다른 COVID-19 보조금과 중복 적용될 수 없으며, 부적절하게 Forgiven 된 PPP Loan 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Directory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D	_	м	'n	_	
	a	Ιl	Ш	u	ı

Ilsup (Iommy) Lee	(213) 639-6285	ext./1/	tlee@chlkcpa.com
Ik Su (Justin) Kang	(213) 639-6296	ext.716	jkang@chlkcpa.com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Henry Kim	(213) 382-8001	ext.780	hkim@chlkcpa.com

Manager

Samantha Kang	(213) 550-2183	ext.712	samkang@chlkcpa.com
Changkwon Moon	(213) 550-2184	ext 720	ckmoon@chlkcpa.com

Staff

Emily Chung	(213) 382-8001	ext.781	echung@chlkcpa.com
Sunny Soh	(213) 365-1700	ext.719	ssoh@chlkcpa.com
Junyong Jung	(213) 550-2091	ext.714	jjung@chlkcpa.com
Frederick Kim	(213) 365-1700	ext.718	fkim@chlkcpa.com
Kyeongbin Park	(213) 550-2186	ext.723	lpark@chlkcpa.com
Bokyung Shin	(213) 365-1700	ext.782	bshin@chlkcpa.com
Taeri Kim	(213) 481-5474	ext.726	tkim@chlkcpa.com
Jihyun Lee	(213) 550-2090	ext.725	jlee@chlkcpa.com
Dukiun Seo	(213) 365-1700	ext 710	dseo@chlkcpa.com

Advisor

Jung G. Choi (Inactive)	(213) 365-1700	jgbsbc@gmail.com
Sung Ha Hong (Inactive)	(213) 365-1700	shong399@gmail.com
Spencer S. Moon	(213) 365-1700	spencermooncpa@gmail.com
Jay Chung	(213) 365-1700	jaynnchung@gmail.com

La Palma Office

1 CENTERPINTE DR., SUITE 350, LA PALMA, CA 90623 T: (714) 676-8100 F: (714) 735-9029

п	_	1	ь.		
μ	n	rı	Гľ	16	M
	а		ш	ΙГ	: 1
	•			•	•

Scott Lee

Da Eun Jung

Son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13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Manager			
Amy Lee	(213) 639-6295	ext.719	amylee@chlkcpa.com
Staff			
Haley Jeehea Ahn	(213) 481-5486	ext.722	hjahn@chlkcpa.com
In Joo Moon	(213) 550-2185	ext.735	ijmoon@chlkcpa.com
Sharon Cha	(213) 427-9595	ext.728	scha@chlkcpa.com

ext.733

ext.729

(714) 676-2097

(714) 676-8100

scottlee@chlkcpa.com

djung@chlkcpa.com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310) 542-6373 ext.701 jko@chlkcpa.com

Staff

Elly Lim (310) 542-6373 ext.704 elim@chlkcpa.com

Advisor

Hong Won Suh (310) 542-6373

La Mirada Office

14730 BEACH BLVD. SUITE 207, LA MIRADA, CA 9063 T: (714) 482-6369 F: (714) 459-7499

Partner

James M. Chung (714) 759-4414 jchung@chlkcpa.com

Staff

John Kim johnkim@chlkcpa.com

OTS in Korea

Manager

Insu Na isna@chlkcpa.com

Staff

Huiji Seo hseo@chlkcpa.com
Yujin Kim yjkim@chlkcpa.com
Eunseol Choi eschoi@chlkcpa.com
Joo Yun Kim julie@chlkcpa.com

